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1-87 관련
----------	----------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수정이유

새마을지도자의 근속기간 삭제 및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을 구분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 봉사하고”를 “봉사활동 하고 있는”으로 변경함.
- 나. 안 제4조 장학생 추천 시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외에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다. 안 제5조 구청장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함.
- 라. 안 제8조 본문 중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로 변경함.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상 봉사하고”를 “봉사활동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과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제8조 본문 중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 ----- 봉사활동하 고 있는 ----- ----- ----- ----- ----- ----- ----- -----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	1.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	1. ~ 3. (현행과 같음)

<u>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u>	<u>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u>	
2. <u>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	2. <u>우등장학생 : -----</u> <u>----- 직전학기 학업성적-----</u> <u>-----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u>	
3. <u>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	3. <u>특기장학생 : -----</u> <u>-----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u>	
<u>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u>	<u>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u>	② (현행과 같음)

<u>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u>	<u>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u>	
<u>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부마포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u>		<u>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 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u>
<u>제5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u>	<u>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선정</u>	<u>제5조(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u>

구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
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
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신 설>

<신 설>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장학생을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

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u>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u>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를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u>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u>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u> <u>후 -----</u> <u>-----.</u> <u>-----</u> <u>-----</u> <u>-----.</u>
--	--	--

 처음으로